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3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오기형

김태년 • 윤호중 • 이연희

정성호 · 정태호 · 강준현

김영환 • 박홍배 • 이기헌

강유정 • 황정아 • 안도걸

김기표 • 문금주 • 윤종군

이재관 · 민홍철 · 송재봉

박민규 · 정준호 · 안규백

차지호 · 정진욱 · 박찬대

박희승 • 최기상 • 임미애

조계원 · 김남희 의원

(3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

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소득월액) ①・② (생	제71조(소득월액)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③
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	
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	
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	
<u>단 신설></u>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
	른 금융투자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
	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